

第62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8月28日(木) 午前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費用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費用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承魯議員外8人 發議)… 1面

(10時23分 開議)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費用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承魯議員外8人 發議)

○委員長 高允根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 정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원의 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승로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도착을 안해서 대신 김수영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壽榮委員 김수영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원의 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종료 및 지급기준을 일부조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의 종류중 현저 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중현저 교통비가 변경되어 지급될 일비와 숙박비를 변경하고자 하며 국외여비지급기준중 숙박비의 등급에 따른 지급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원의 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高允根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시작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專門委員 崔石根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원의 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실음)

○委員長 高允根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植委員 김영식위원입니다.

토론보다 하나 물어볼려고 그러합니다.

대통령령이 12월30일날 개정이 되었구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도 지금 검토중이라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된 뒤에 해도 지금 예산상도 그렇고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8월달에 급히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委員長 高允根 전문위원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專門委員 崔石根 전문위원 최석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중에 일부 구청에는 개정을 완료한데가 있고 일부 구에는 검토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개정조례안이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모든 조례는 그것이 순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여비에 관한 규정이나 이것은 방금 제가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단서조항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에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제3호에 보면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령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저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 하등의 잘못된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정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金榮植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상 문제도 없다고 아까 검토보고에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꼭 이게 지금 해

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이 완전히 되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해도 별 이상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지출문제가 포함된다 하면 바로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서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專門委員 崔石根 지금 여비가 인상이 되면 예산이 조금 지출이 저저한테 기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지출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金榮植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高允根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수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壽榮委員 김수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제안설명자료써 원칙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찬동하면서 의문점을 최석근전문위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검토중 해놓고 지금 방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맥을 같이 하면서도 제가 의문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북구의회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조례 제4항에 국내여비규정을 개정을 먼저하고 만일에 개정하고 나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여비지급을 하였을 때 그 이후에 지방자치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나와서 혹시 숫자상으로나 또 문안상으로 상충이 되거나 변경이 되었다면 또 개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조례를 선포하고 후에 시행령개선이 나와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령15247호 제2조가 작년도 12월31일에 개정이 되었다면 오늘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 지난 12월3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사이에 지급된 여비를 소급해서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우리 조례 통과된 이후에 하는 것인지 령이 벌써 나온지 8개월간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 사이에 발생한 여비지급에 관한 문제는 어느 곳에

맞춰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崔石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규정 제2조에 '96년12월31일 대통령령 15247호에 의해서 일부 개정된 것은 의장, 부의장은 일비가 1만원, 숙박료가 4만1,000원,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일비가 1만원, 숙박료가 1만9,5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12월31일자로 개정된 것이니까 또 금년도 '97년도에 다시 개정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로서는 개정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계속 시행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존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또 지방자치시행령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미 개정한 대로 관계없다는 그런 것이고. 집행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비는 현재 의정활동공통경비를 가지고 이때까지 세미나나 의원활동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관계는 거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金壽榮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高允根 12월31일날까지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댔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느냐.

○專門委員 崔石根 소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행위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급은 거론될 수 없지 않느냐.

○金壽榮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지, 원칙론으로 봐서 이미 옛날에 행위는 지나갔는데 행위 지나가고 난 12월31일부터 오늘까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선 대통령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조례가 확정된 이후부터 발생한 것에 대해서,

○專門委員 崔石根 소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委員長 高允根 다른 위원님?

예, 최동환위원장.

○崔東煥委員 최동환위원장입니다.

방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김수영위원장

질의에 소급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원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에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지출경우가 세미나라든지 수련회 경우에도 국내여비 지급이 적용되는 겁니까? 유주임님?

○議政係職員 다시한번.

○崔東煥委員 국내여비 지급하는 경우가 의원들 세미나나 수련회 경우에도 지급기준이 적용되는지,

○議政係職員 적용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여비 규정은 적용되지만 세미나나 산업시찰 가셨을 때 이 규정에 적용해서는 집행되기 어려워가지고 공통경비로 비용을 정해가지고 1인당 숙박비나 여비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지금까지는 국내여비기준은 지난번에 무주리조트 현지방문 1인당 8만1,000원 나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소급은 개정후로만 돼있기 때문에 소급은 안됩니다.

○崔東煥委員 그런데 지난 해의 경우 예를 들면 국내여비가 지출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만 나갔어요?

○議政係職員 작년에 비교시찰 부산 수정구 의회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몇 분 타구에 전학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나갔습니다.

○崔東煥委員 제가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지금은 아직 지방자치 구의회가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활동력이라든지 활동의 폭들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진척이 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지방의원들의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과외적인, 국회의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 활동같은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아직 그런 것이 미약한데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되지 않

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로 지난해에 보면, 지난번 결산검사 때 빠져리게 느낀 부분이 의정활동비에서 여비로 잡힌 부분, 국내여비로 잡혀있던 부분이 약 7,300만원 정도 되는데 4,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불용되었는데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지만 예산절감이라는 말의 뒷면에는 굉장히 허구적인 말인데, 그 말이. 그 뒷면에는 우리 의정활동의 소홀함, 무심함 이런 것들이 배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들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꼭 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동영역에서도 개인적으로 볼때는 저는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른 지방의회라든지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외적으로는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라든지 아니면 지방행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사안별로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앞장서 가지고 찾아서 발굴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안하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高允根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위원님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했고 또 특별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개인적으로 타구하고 의원활동 하는데도 이러한 여비규정을 잘 활용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李龍燮委員 위원장님,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委員長 高允根 끝내고 하죠.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마치고 간담회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李龍燮委員 안되요.

○金壽榮委員 위원장님, 토론시간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말씀하시고 의사봉 치는 일만 남았는데,

○委員長 高允根 가결되었으니까 선포는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회선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金壽榮委員 아니, 의사진행발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하죠.

○李龍燮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高允根 예, 그러면 이용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龍燮委員 지난 운영위원회 때 동료위원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하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의장단에서 결의한 것을 통과시키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여기서 어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우리가 이번 임시회를 일정을 우리가 여기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갔더니 25일부터 임시회가 개최된다는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집에 갔는데 벌써 우편으로 와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결정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高允根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라기 보다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가 임시회를 하려면 일자가 우편발송하고 하는 기간이 1주일 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참조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아마 사무국에서 우편통지가 늦어가지고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대로 제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사과로써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을 해봤자 좋은 결론은 안나올 것 같아서 사무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문발송 시간이 짧다보니까 그것을 기피 될 것이니까 우편으로 빨리 연락을 해서 우리 전 의원이 숙지할 수 있게끔 사전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날짜를 미리 회의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1주일전, 10일 정도 기간을 남겨놓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런 우편송달이 원활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미스(miss)를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끝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李龍燮委員 말씀중에 분명하게 시간이 잘 안맞아가지고 미리 보냈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자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金壽榮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용섭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밝히신 의사는 본위원회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오늘 회의의 성격상 이 시간 끝나고 필요한 간담회 시간에 더 보충하고 충분히 가슴을 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산회를 하시기를 동의합니다.

○李龍燮委員 산회도 좋습니다마는 책임소재가, 시간이 잘 안맞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무국에서 잘못했는지 의장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아요?

(「간담회때 이야기 하죠」하는 이 있음)

(「회의를 마치죠」하는 이 있음)

○委員長 高允根 예,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散會)

○出席委員 9人

高 允 根	李 龍 燮	崔 東 煥
金 壽 榮	朴 景 錫	李 大 一
金 榮 植	金 甲 濟	徐 榮 振

○缺席委員 6人

李 承 魯	文 京 周	宋 夏 星
崔 桂 洛	金 南 孝	許 東 翼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崔 石 根
---------	-------